

#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8월 26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8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9. 9) 상정
- 제14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9. 9) 원안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예산법무과장 권 희 춘)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423호, 2007. 5. 11. 공포·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0306호, 2007. 10. 4.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보상금의 지급기준·청구·지급결정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보상심의회 의 간사 및 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 6. 소수의견

○ 없 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87호
의결 년월일	2008. 9. 10 (제146회)

제출년월일 : 2008. 8. 26.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423호, 2007. 5. 11. 공포·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0306호, 2007. 10. 4.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보상금의 지급기준·청구·지급결정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나.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다.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라. 보상심의회회의 간사 및 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 칙 부: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부천시의회 의원(이하 “시의회의원”이라 한다)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시의회의원이 회기 중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영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시의회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 및 부모를 말한다.
4.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폐질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해”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서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4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시의회의원 본인 또는 해당 시의회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1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청구인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심의회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에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본청 관련 국장 1명
2. 의무직공무원 1명
3. 시의회의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1명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8조(보상심의회회의 기능) 보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액의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9조(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보상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보상심의회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보상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이 보상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상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심의회는 의원상해등보상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심의회 의 간사) 보상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 본청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3조(수당 등) 보상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접 수	제 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처리기간
					즉 시
보상대상 의회의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보 상 금 청 구 내 용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상해·질병				
사망·장애· 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					
보상심의회 심 의 결 과	· 결정내용:  · 결정이유:  · 위원서명				
<p>「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1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p> <p>부 천 시 장 귀하</p>					

## 〈관계법령발췌서〉

### ○ 지방자치법

제34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 단서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④ 법 제34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폐질상태의 정도구분)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의 폐질상태의 정도구분(이하 "폐질등급"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으며, 폐질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폐질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질정도에 따라 폐질등급에 정하여진 폐질상태에 준하여 그 폐질등급을 정한다. 다만, 제2급 내지 제10급에 해당하는 폐질이 2개부위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폐질 2개에 대하여 별표 2에 의한 각각의 부위별 폐질등급을 정한 후 그 폐질등급에 따라 별표 3에 의하여 종합폐질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00.12.30>

②제1항의 폐질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판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2008.2.29>

## (현행 조례)

###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1994. 11. 10 조례 제1297호

개정 1995. 08. 31 조례 제1371호

개정 1998. 10. 10 조례 제1603호

개정 2000. 03. 24 조례 제1729호

개정 2006. 07. 06 조례 제216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06.07.06>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6.07.06>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6.07.06>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 제1항의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의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감하고 지급한다.<신설 1995.08.31>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제2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에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중 1인
2. 시 본청 관련 국장 1인<개정 1998.10.10>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①위원장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시 본청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1994.11.10 조례 제1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8.31 조례 제1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3.24 조례 제1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7.0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